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46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최민희·노종면·정동영

김우영 · 서영교 · 한민수

김남근 • 박민규 • 김 현

이해민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

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 일시
- 2. 안건
- 3. 의사 진행 과정 및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 5. 표결 수
-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 임원 중 3명

- 을 호선(互選)하여 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 각 장 사이에 걸쳐 서 서명하게 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
	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을 작성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건
	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
	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
	會) 일시
	<u>2. 안건</u>
	3. 의사 진행 과정 및 참석자들
	의 발언 내용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u>5. 표결 수</u>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과 회의조서에는 출
	석 임원 모두가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서명[「전자서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
	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명을 호선(互選)하여대표로 회의록과 회의조서의각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게하거나 간인(間印)하게 할 수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